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자상거래등에서의
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관명 (부서명)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온라인 눈속임 상술(일명 “다크패턴”)을 규율하기 위해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 시행('25.2.14.)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,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고지 방법 구체화

- 1)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,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고지하도록 함

나.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 변경

- 1)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,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을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치 진행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7. 18. ~ 8. 27.)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 방법)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“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”란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·광고 첫 화면에서 다음 각 호를 알린 경우를 말한다.

1. 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
2.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·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추가 항목이 총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

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란 제3호 중 “사업자등록증(확인)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. 담당 공무원의 확인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란 제2호 중 “사업자등

록증(확인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. 담당 공무원의 확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4(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 방법)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“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”란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·광고 첫 화면에서 다음 각 호를 알린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총금액을 표시·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</u> <u>2.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·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추가 항목이 총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</u>